

제26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12월 임시) 녹취록

회의명	제26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일시방법	'23. 12. 26.(화) 16:00~16:20, ZOOM 영상
참석자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6), 심의 안건 담당 과·계장(3)
부의안건	심의안건 4건

위원회 개최

위원장) 바쁘신 와중에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차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안건 4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심의 안건(4건)

〔제56호〕「경상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위원장) 먼저 안건 제56호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입니다.

먼저 회의 자료 제5쪽 심의 안건 제56호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3일자로 제정된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2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 배경입니다. 2023년 5월 9일 대통령령인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5항 제6항에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는 대상과 원격 영상회의의 운영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는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조례에도 서면 원격 영상회의의 포함회의의 운영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11월경 성격이 유사한 도 소속 위원회 통폐합 지시에 따른 2023년 7월 28일자에 정책자문위원회와 정책연구위원회를 통합하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책자문단 운영 설치 근거 조항을 상기 조례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 사망 사항, 위원회 회의 등은 회의는 대면회의, 원격 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① 일상적 반복적 안건으로서 그 내용이 경미한 경우,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해 이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없는 경우 ③ 그 밖에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 의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9조의 2 정책자문단의 설치 등은 정책자문단 설치권자를 도지사라고 그 외에 위원회 구성 등 필요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7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 9월 위원회 정기 심의 전후 경남도청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절차를 진행한 후 의견을 반영하여 문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위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 설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규정 위원) 지난번 저희들이 회의 때 이것을 논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이 개정안은 우리가 제안을 해서 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총괄과장) 도에서 발의하여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의회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네 그럼 안건 제56호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들) 없습니다.

위원장) 그러면은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7호〕「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

위원장) 다음으로 안건 제57호 넘어가겠습니다. 제57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님 계속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총괄과장) 회의 자료 제16쪽, 심의 안건 제57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앞서 제56호 안건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경상남도 자치경찰 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5조 제3 4항에 서면 및 원격 영상회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하위 법령인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에도 개정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운영 규정의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운영규정을 전반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운영규정 제8조는 회의는 원격 화상회의를 포함한 대면 회의가 원칙이고, 서면회의의 경우 조례 내용과 같이 첫째, 경미한 사안, 두 번째 긴급, 세 번째 특별한 사정 시에 개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는 간사를 자치경찰총괄과장, 서기를 회의 운영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2조는 비밀 엄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조는 관계기관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조항 순서나 용어를 바꾸었을 뿐 전체 내용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자세한 조항은 제17쪽 신규대조표 제25조 개정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금 제안 설명하신 안건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규정 위원) 조례 개정안이 아직 의회에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이 통과 될 걸 전제로 우리가 먼저 우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순서가 맞는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총괄과장) 이 운영 규정 개정안은 조례가 통과 되면 그때 이후에 발효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규정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 하는 데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발효 시점을 조레 통과한 이후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건 제57호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8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안)

위원장) 다음 안건 제58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58호는 자치경찰 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에 대한 것입니다.

자치경찰 총괄과장이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총괄과장) 안건 제58호 회의 자료 제42쪽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승진 임용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 제8항에 따라 도 경찰청장이 추천한 2023년 12월 31일자 특별승진 2024년 1월 1일자 근속 승진 대상자에 대한 승진 임용을 심의 요청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임용 대상자는 경사로의 승진 10명, 경장으로의 승진 3명으로 총 13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 김도영 경장 등 5명은 2023년 경찰청 특별승진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발된 승진자이며 김현주 경장 등 8명은 2024년 1월 1일자 근속 승진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43쪽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 공무원 승진 임용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또는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규학 위원) 위 대상자들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다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근속 승진 임용할 것을 의결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원들)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9호)지구대장·파출소장 보직 사전 의견제시(안)

위원장) 마지막 안건 제59호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사전 의견 제시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경찰총괄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과장) 안건 제59호 회의자료 제46조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사전 의견 제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을 보직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사전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8일 위원회 정기회의 시 심의한 내용으로 2024년도 인사발령부터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시 사전 의견 제시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의 의결하여 의견 제시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심의 의결 대상자는 거제경찰서 장승포 지구대장 보직 대상자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47조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 위원님 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이 안건은 바로 지난번 우리 정기회의에서 지구대장 파출소장 보직 인사 시에 사전 의견 제시하는 절차를 변경했던 이후 있는 1호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의견을 제시하자고 그렇게 절차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서 심의 의결을 요구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른 의견은 특별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위원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제정구 경감을 장승포지구대장으로 전보 발령하는 이 인사 건을 ‘적절함’ 으로 표시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들)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위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 회

위원장) 이상으로서 이제 오늘 임시회의 안건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연말을 잘 보내시고 내년도 우리가 마지막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최 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그런 결심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12월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